



수출거래약정서

년 월 일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귀중

인

수출자 :

인

주 소 :

인감
대조

당사는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과 수출거래약정서에 따른 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수출거래약정서'가 적용됨을 승인하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및 수출거래 기본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함.

인

위 수출자(이하 "수출자"라 함)와 위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은 제1조 각호에 정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르기로 한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정서는 다음 각호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거래에 적용하기로 한다.

1. 신용장방식에 의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의 매입
2. 무신용장방식에 의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의 매입
3. 보증신용장 등에 의한 무화환어음(Clean Bill)의 매입
4.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대금의 추심
5.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거래

제 2 조 수출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진정

수출자는 은행에 제출하는 수출환어음(수출화물대금, 기타 대금지급에 관한 환어음, 영수증 또는 이들과 동종의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음) 및 선적서류(운송서류, 보험서류, 상업승장 및 기타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에 의하여 요구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가 충분, 정확, 진정, 유효하고 신용장의 조건, 수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의 조건과 완전히 일치할 것임을 보장한다.

제 3 조 보증서 등 제출

- ① 수출자는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매입시 하자가 발견된 경우는 물론 매입 후 환거래은행 등 (신용장발행은행, 재매입은행, 추심은행, 상환은행, 지급은행, 인수은행, 기타 신용장 또는 수출거래관계 은행 등을 말한다. 이하 같음)으로부터 하자통보가 있는 경우에도 은행이 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다. 다만,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매입시 발견된 하자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서를 제출함이 없이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매입(추심)의로서 등에 하자사항을 기재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등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은행 또는 환거래은행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은 환거래은행 등에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보증서 제출 전에 그 사실을 수출자에게 통지한다.
- ③ 제1항, 제2항의 처리로 말미암은 비용 및 손해는 수출자가 부담한다.

제 4 조 담보

- ① 수출자는 수출화물(선적서류에 표시된 화물을 말한다. 이하 같음) 및 선적서류를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의 매입에 의하여 부담하는 차무와 이에 부수하는 이자, 할인료, 수수료, 지연배상금, 부대비용 기타 은행에 대한 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다.
- ② 은행은 매입한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제3자에게 재매입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출화물 및 선적서류를 그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③ 거래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출화물이 멸실, 훼손, 변질, 분실, 감가 등으로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신용이 악화된 경우, 수출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고 또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이를 추가하기로 한다.
- ④ 은행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대금을 수출자의 은행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의 상환에 충당할 수 있다.

제 5 조 환율

- ① 수출자가 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대금을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매입 또는 추심신청시와 관계없이 수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날의 해당 매입환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 ② 수출자가 제13조에 의한 환매채무의 대금을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하는 날의 은행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 ③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가 미합중국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경우에도, 은행은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대금을 미합중국 통화로 결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출자는 환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곧 지급한다.

제 6 조 비용 등의 부담

- ① 수출자는 제1조 각호의 거래에 따른 이자, 할인료, 수수료, 우편료, 전신료, 지연배상금, 기타 비용 및 은행 또는 환거래은행 등의 권리행사, 권리보전, 담보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비용과 손해를 부담하며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관련 규정이 정한 기간내에 지급한다. 다만, 수출자가 은행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 ② 수출자 이외의 자가 제1항의 이자, 할인료, 수수료, 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출자의 비용으로 은행이 수출자 이외의 부담자에게 청구하였으나 입금되지 아니하여 수출자에게 청구한 때는 수출자가 이를 은행의 관련 규정이 정한 기간내에 지급한다. 다만, 은행이 추후 수출자 이외의 부담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반환한다.

③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매입 후 은행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예정일 후에 인수 또는 입금이 이루어진 경우 수출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은행의 관련 규정이 정한 기간내에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이자, 할인료, 지연이자, 지연배상금, 수수료, 비용 등의 요율, 계산방법 및 환율과 그 적용방법 등은 은행이 정하여 고시하기로 한다. 단, 지급거절 등에 따른 법적비용, 대체거래에 따른 거래비용 등 사안에 따라 금액의 편차가 큰 항목은 고시하지 않기로 한다.

제 7 조 환거래은행 및 송달방법의 설정

환거래은행의 설정과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의 송달방법은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의 조건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달리 선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수출자가 부담한다.

제 8 조 선적서류의 인도

① 신용장에 의한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신용장 발행신청인, 수출화물의 매수인 등에게 인도할 때는 신용장조건에 따른다. 다만 신용장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 또는 환거래은행 등은 환거래은행 등의 소재지의 법령이나 관습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 무신용장에 의한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지급인, 수출화물의 매수인 등에게 인도할 때는 매입 또는 추심신청서에 기재된 조건에 따르기로 한다. 다만, 은행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환거래은행 등의 소재지의 법령 또는 관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은행 또는 환거래은행 등은 인도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출환어음의 인수인이 수출환어음의 만기전에 선적서류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은행 또는 환거래은행 등은 수출화물의 송장가격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수령하고 선적서류를 인도할 수 있다.

④ 은행이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하거나 환거래은행 등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곧 수출자에게 통지한다.

제 9 조 수출화물의 운임, 보관료, 보험료 및 보전에 관한 비용 및 손해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 및 손해 등은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수출자가 부담한다.

i. 수출화물에 관계된 운임, 보관료, 보험료 및 기타 비용

ii. 수출화물의 수송, 보관, 인도 등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의 손해배상금

iii. 수출화물의 수송, 통관, 창고, 보험 등 관계자의 고의나 과실 또는 전쟁, 사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말미암은 손해

iv. 수출환어음, 선적서류 및 수출화물의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

②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대금의 지급의무자(신용장발행은행, 신용장확인은행, 수출환어음의 인수인, 수출환어음의 지급인 등 기타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대금의 지급을 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지급, 인수 또는 채무의 확인을 거절한 경우 은행 또는 환거래은행 등은 수출화물의 양류, 통관, 입고, 부보, 전매 등 수출화물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말미암은 비용 및 손해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수출자가 부담한다.

③ 선적서류의 인도전에 수출화물이 양류지에 도착한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은행이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환거래은행 등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곧 수출자에게 통지한다.

제 10 조 지급 등의 연기

①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대금의 지급의무자가 지급, 인수 또는 채무의 확인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은행은 수출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승낙할 수 있다. 다만, 은행 또는 환거래은행 등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수출자의 동의없이 승낙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승낙한 사실을 곧 수출자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은행 또는 환거래은행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는 은행의 고의나 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자가 부담한다.

제 11 조 참가인수 등

①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에 관하여 제3자가 조건없이 참가인수, 참가자급 또는 채무인수를 요청한 때는 은행 또는 환거래은행 등은 이를 승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그 사실을 곧 수출자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은 각각의 지급의무자가 인수, 지급 또는 채무의 확인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은행의 고의나 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자가 부담한다.

제 12 조 거절증서

① 수출환어음의 매입 또는 추심신청서상에 명백히 거절증서 작성(외국의 법제상 이에 준하는 법적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을 요구한 어음 외에는 모두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한 것으로 한다.

② 수출환어음의 매입 또는 추심신청서상에 거절증서 작성에 관한 명백한 요구에 따라 은행이 환거래은행 등에 그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된 경우에는 은행 또는 환거래은행 등이 소구권행사 등 채권보전을 위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자의 비용부담으로 거절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거절증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거절증서는 작성지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 13 조 매입대금상환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수출자는 은행으로부터 통지, 독촉 등이 없어도 당연히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화환어음 매입대금 또는 미수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한다.

1. 수출자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제 1 항 (당연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든 화환어음

2. 화환어음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 약관 제 7 조 제 1 항 (당연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가 지급의무자로 되어있는 모든 화환어음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화환어음에 대해 은행은 유선통화, 전자우편, 서면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해 청구하고, 이에 따라 수출자는 화환어음 매입대금 또는 미수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변제하기로 한다.

1. 은행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기간까지 은행의 매입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거나 화환어음의 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화환어음

2. 환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지급 또는 인수가 거절된 경우의 그 화환어음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는 화환어음이 은행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간까지 상환되지 아니하며 미수금 계정으로 대체 처리된 경우 및 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거 회수가 불확실하거나 회수 불능이 확실하여 회수의문 또는 추정순실로 분류되어 미수금 계정으로 대체처리된 경우

③ 제 1 항, 제 2 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도이자, 수수료, 비용 등은 수출자가 부담하고 은행의 청구에 따라 은행의 관련 규정이 정한 기간내에 변제한다. 이 경우 은행은 요율, 계산방법 및 환율과 그 적용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되, 지급거절 등에 따른 법적비용, 대체거래에 따른 거래비용 등 사안에 따라 금액의 편차가 큰 항목은 고시하지 않기로 한다.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한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은행은 수출환어음, 선적서류 및 수출화물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제 1 항, 제 2 항과 관련하여 은행은 수출자에 대한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의 환매청구와는 별도로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수출자가 요청하거나 기타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거래은행 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6 은행이 확인한 기한부신용장하의 하지없는 선적서류의 매입은 제 1 항과 제 2 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수출자는 미결제된 채무의 회수나 그것으로부터 발생되는 법률상의 지급실행절차에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협조할 것이며, 법적절차에 의해 요구되는 채무입증을 위한 부가서류의 제출 및 증거물을 제공할 것에 동의한다. 만약, 개설은행이 법원의 명령서에 의해 해당 신용장하에서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수출자가 연루된 사기, 불법, 권한 없는 행동으로 기인하여 은행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은행은 서면으로 수출자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수출자는 화환어음 매입대금 또는 미수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이를 곧 갚기로 한다.

제 14 조 수출화물 처분대금의 변제충당

○ 1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대금의 지급의무자에 의한 지급, 인수, 채무의 확인이 은행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기간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거절된 때는 은행 또는 환거래은행 등은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수출자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수출화물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매입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이에 부수하는 부도이자, 수수료, 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부족금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이를 은행의 관련 규정이 정한 기간내에 지급한다.

② 제 1 항에 의해 수출화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수출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③ 은행이 수출화물 및 선적서류를 처분하여 제 1 항의 채무와 부도이자 등의 변제에 충당한 후에도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수출자가 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가 있는 경우 은행은 이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3 조에 준하여 수출자의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 15 조 보험금

① 은행은 수출화물에 대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출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곧 제출한다.

② 은행이 제 1 항의 보험금을 제 4 조 제 1 항의 채무 및 이자 등의 변제에 충당한 후에도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수출자가 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 13 조에 준하여 수출자의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 16 조 수출환어음 등의 반환

- ① 이 약정에 의하여 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0 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에 의한 상계, 대리 환급 변제충당의 경우 은행은 수출자에게 수출환어음, 선적서류 및 수출화물을 채무변제 등의 시점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② 수출자는 제 1 항에 의하여 은행이 반환하는 수출환어음, 선적서류 및 수출화물을 은행의 거래영업점에서 수령한다. 다만, 수출화물은 수출화물 또는 수출화물인도 청구권을 표시하는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반환받은 것으로 한다.
- ③ 수출환어음, 선적서류 및 수출화물의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반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한다.
- ④ 제 1항 내지 제 3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손해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수출자가 부담한다.

제 17 조 제재(Sanctions)

① 진술

수출자는 다음의 내용을 진술하고 확인한다.

1. 수출자 · 수출자의 자회사 · 이들의 이사 등 임직원 · 대리인 · 계열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 통제하고 있는 개인 · 단체(개인, 단체를 포함하여 "법적 주체")가 아니다.

(1)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CO), 미국 국무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럽연합, 영국 재무부, 홍콩 금융감독청 (HKMA)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조치 또는 강제한 제재("제재")의 대상.

(2) 제재 대상 국가 또는 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배하는 영토(서) 위치하거나, 조직되어 있거나 거주하고 있음.

2. 개별 신용장(이하 본 제재 관련 조항에서 청구보증서, 보증신용장을 포함함)과 관련하여 수입, 수출 또는 업무에 필요한 면허 · 허가를 취득하였고, 수출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관할과 관련된 또는 은행에 개설을 의뢰하는 신용장 및 선적 · 금융 등 신용장에 기재된 주요 사항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을 준수한다.

② 면제 및 면책

수출자는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다.

1. 은행 · HSBC Holdings plc · 그 계열사 · 자회사(들을 포함하여 'HSBC 그룹'), HSBC 그룹의 서비스공급자는 제재 · 자금세탁 · 테러목적 자금조달 · 뇌물수수 · 부패 · 탈세 방지 등과 관련된 각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은행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 또는 다른 그룹 구성원이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 제재 등에 관련된 국내외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이하 '준법 조치')를, 직접 취하거나 다른 HSBC 그룹의 구성원들에게 지시할 수 있다. 준법 조치는 지급 · 교신 · 지시의 확인 및 조사, 법적 주체가 제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 제재를 따르지 않는 신용장 발행 · 지급 · 갱신 · 확장 · 이전 및 거래 · 지시의 이행 거부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은행 · 은행에 대한 서비스공급자 · HSBC 그룹 구성원들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취하는 준법 조치와 관련하여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 손해 · 자연 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 불이행에 대해, 은행 또는 HSBC 그룹 구성원은 관련 준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수출자는 고의, 사실과 다른 진술 또는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준법 조치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은행의 손실 · 비용 · 손해 · 제 3자의 청구 · 조치 · 소송 · 책임(들을 포함하여 "손실")에 대하여 은행을 면책하고 보상한다.

제 18 조 서류제출

수출자는 은행이 법령 등에 의한 상당한 사유로 본 약정에 따른 거래와 관련한 허가서, 추천서, 증명서, 신고서 기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곧 제출한다.

제 19 조 적용기간

이 약정의 적용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이나 수출자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등 상호가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해지 전 최소 30 일 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한다. 또한, 해지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는 이 약정이 계속 적용된다.

제 20 조 언어

이 약정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되며 국문본과 영문본이 상치되는 경우에는 국문본이 우선한다.

제 21 조 준용규정

수출자와 은행은 이 약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는 한 국제상업회의소의 [신용장 통일규칙][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및 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다만, 위 통일규칙과 은행의 관련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위 통일규칙에 따르기로 한다.

확인서

(수출환어음매입용)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앞

1. 신용장(계약서) 등의 내용

(1) 신용장(계약서)번호 :

(2) 발행은행 :

(3) 신용장(계약서)금액 :

(4) 매입은행 :

(5) 지급은행 :

2. 위 신용장(계약서)에 의한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매입과 관련하여 본인/당사는 귀행에 아래와 같은 신용장(계약서)조건과의 불일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하자사항을 확인하며 은행이 신용장(계약서)에 의한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매입으로 말미암아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당사가 이를 부담하겠습니다.

불일치내용

년 월 일

본인 / 당사 :

인

명판

주소 :